

● 제319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6. 2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868

I. 조례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안경과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3. 5. 30.
- 회 부 일 : 2023. 6.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서울 소재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과의 상생을 위해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예산 범위에서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7조의3제2항 신설)

-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지원사업을 위해 자치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의3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비용추계서 참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3. 4. 13.~5. 3.)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의 활성화와 민간 키즈카페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예정인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민간 키즈카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사업 시행시 자치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2 주요사항 검토

□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지원 (안 제7조의3)

- 개정안은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신설>	<u>제7조의3(민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1.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행	개정안
	<p><u>등에 대한 인증서 교부</u></p> <p>2. <u>민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시설개선</u></p> <p>3. <u>시설 활성화 등을 위한 시설 이용자에 대한 지원</u></p> <p>4.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② <u>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③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 현행 조례 제7조의2¹⁾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고 지원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양육자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차원

1)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의2(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시장은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에서 저렴한 이용요금(2시간 기준 3천원)²⁾으로 돌봄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총 400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현재 총 8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 개요

- 시설유형 :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①항의 7. 아동전용시설)
 ※ 시립은 사회복지시설, 구립은 區 여건에 따라 규정하되, 사회복지시설 관리기준 준수 권장
- 사업내용 : 계절·미세먼지 및 경제적 부담없이 아이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 추진방법 : 시·자치구 협력 추진 ※대규모 시설은 市 자체 설치·운영

- (市) 설치·운영비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및 홍보, (區) 공간 발굴, 설치·운영



- '23년 확충목표 : +71개소(시립 +4, 구립 +67)

목표(누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29	100(+71)	200	300	400
시립	8	12(+4)	16	19	22
구립	21	88(+67)	184	281	378

-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 초기부터 민간 키즈카페 사업자들은 시장 경제를 침범한다면서 이익과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민간 키즈카페 업

2)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이용료

구분	대 상	이용요금	비 고
입장료	아동 (0세 ~ 만9세)	3,000원/인/회	2시간 기준

※ 돌봄서비스 이용 시 돌봄비 2,000원/인/회 추가

체들이 피해나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민간 사업자와의 상생방안을 요구한 바 있음³⁾.

- 서울시는 민간키즈 카페와의 마찰을 해소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⁴⁾하고 '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상태임.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 인증규모 : '23년 시범사업으로 25개소 추진 ※ 인증규모는 향후 변동가능
 - 인증절차 : 市 공고 → 區 접수 → 여가재단 심의 → 市 인증확정
 - 인증기준 : 안전·편의·위생 등 시민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항목별 점검
 - 인증기간 : 1년(~ 24. 9월말까지)
 - 지원방법 :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 전용 서울페이상품권 발행으로 민간 키즈카페 이용자에게 시설이용에 대한 할인혜택(20%) 등 부여
 -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민간 키즈카페 중 신청자격을 갖춘 사업자
- 이에 동 개정안은 절차에 따라 안전·편의·위생 등의 지표에서 기준 이상인 민간 키즈카페를 서울형 키즈카페로 인증하고 인증 받은 키즈카페에 서울페이로 이용요금의 일정액(20%)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키즈카페의 참여를 통한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의 활성화와 동시에 공공과 민간의 상생을 도모하

3)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2022. 7. 22.),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 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p.23

4) 여성가족정책실(아이돌봄담당관)(2023.6.9.),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 추진 계획”, 아이돌봄담당관-7183.

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인정된다 할 것임.

- 또한 「지방재정법」⁵⁾에서 보조금의 교부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도록 하고 있고, 「공직선거법」⁶⁾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따른 금품제공행위는 예외적으로 기부행위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안은 「공직선거법」등의 상위법 위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안제7조의3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지원 내용 중 제2호에 따른 시설 지원의 경우, 제1호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한 인증서 교부와 제3호 시설 활성화 등을 위한 시설 이용자에 대

5)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6)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한 지원과 달리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임.

- 향후 민간 사업자의 참여 확대 등을 고려하여 시설 개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계획 상에는 인증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산적 성격의 매몰비용으로 볼 수 있는 시설 개선은 최소 2~3년 이상의 인증제 유지 의무기간을 두거나 회수 조건을 다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안제7조의3제3항은 자치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 제7조의2⁷⁾에서 이미 구립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시비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조문의 정비 (안 제7조의2제1항)

- 개정안은 조문의 이해를 높이고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음.

7)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의2(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④ 시장은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p>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아동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사업 및 교육사업: 아동과 함께 일하는 종사자(공무원, 교사, 보육교사, 아이돌보미 등), 부모 등 아동의 놀이권을 존중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기회의 제공</p> <p>6. (생략)</p> <p>② (생략)</p>	<p>제7조(지원사업) ①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 ----- <u>등이 아동</u>----- ----- ----- --</p> <p>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놀이활동가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아동 놀이문화의 공유 및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놀이활동가를 지원할 수 있다.</p> <p>1.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u>각종</u> 놀이프로그램 운영</p> <p>2. (생략)</p>	<p>제11조(놀이활동가 지원) ① ---- ----- ----- ----- ----- ----.</p> <p>1. ----- -- <u>각종</u> -----</p> <p>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3 종합 의견

- 동 개정안은 서울형 키즈카페의 민간 키즈카페와의 상생과 활성화
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 키즈카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
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시설 개선 지원의 경우 자산적 성격의 매몰비용으로 민간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1년 보다는 최소 2~3년
이상의 인증제 유지 의무기간을 두거나 회수 규정을 명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음.

문 의 처

이정화 입법조사관 (02-2180-8146)